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채용실시 기관	직종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 기관	지역 제한	채용 예정
				계	2명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사무 보조원	사무보조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	제한 없음	1명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이서남로328)	제한 없음	1명

2 근무 조건

- 가. 채용기간: 채용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무기계약)
- 나.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 *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에 따름
- 다. 보 수: 예산 범위 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기본급(1호봉) 및 정액급식비 세전 약 203만 원(세전)
 -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별도지급
 - * 2023년 기준이며, 추후 변동 시 변동금액 적용
- 마.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바. 기타사항: 「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관리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680호, '23.11.30.)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정함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 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24년 말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국민건강검진(일반) 결과로 같음)

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가. 자격·면허 소지자(서류전형 3~5점 가점)

<사무보조원>

- ① 컴퓨터활용능력 1급(4점), 2급(3점)
 - * 1·2급 자격증 모두 보유 시 상위자격증(1급) 1개만 인정
- ② 워드프로세서(3점)
 - * '12.1.1부터 워드프로세서 2·3급이 폐지됨에 따라, 그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1급만 인정
- ③ 사무자동화산업기사(3점)
- ④ 정보처리기능사(3점), 정보처리산업기사(4점), 정보처리기사(5점)
- ⑤ MOS(3점)

나. 저소득층·장애인(사회형평가점, 서류전형 3% 가점)

☞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어도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저소득층·장애인의 범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 * (장애인 입증서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 우대요건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우대요건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 우대·가점은 서류원서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규모의 5배수를 넘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는 5배수까지 결정
- * 단, 서류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나. 2차 면접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① 국가관 및 사회성, ②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4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가점에 해당하는 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의 결격여부를 확인하여 최종합격자 선발
-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면접 고득점자순으로 차순위자에 대한 추가 선발 진행
- ** 당해 채용시험의 근로계약 포기자 발생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 면접시험 고득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24.3.27.(수)~4.8.(월) (접수는 3.28.(목)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나. 접수방법: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배부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사무보조원 응시원서 재증” 표기

다. 접수처 주소: (54619)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 교통안내

익산역	■ 버스 20, 24, 24-1, 66, 67, 67-1, 76, 80, 101	이리공고 후문 정류장 하차 → 도보 5분 거리
버스터미널	■ 버스 101, 104	



7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4. 4. 15.(월) 예정

나. 면접시험: '24. 4. 19.(금)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24. 4. 24.(수) 예정

라. 채용 예정일 : '24. 5. 1.(수) 예정

* 채용 예정일 이전에 근로계약서 체결 및 신규자 교육 실시

☞ 합격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www.molit.go.kr/irocm>) 게시 개별통보

*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제1호) 1부

② 응시원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 이력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8호) 각 1부

⑥ 주민등록초본 1부

* 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병역사항 미기재시 병적증명서 1부 별도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① 저소득층 증명서 1부
- ②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③ 가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9 기타 유의사항

- 1인당 1개 모집단위 1개 직종에만 응시 가능하며, 중복 지원(직종·모집단위)한 자는 불합격 처리되므로 이를 유념하여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회에 제공됨
- 현장에서 복사,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자격증 및 관련 증빙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특히, 채용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상 청탁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점수가 고득점자인 사람의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응시 원서상 기재사항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민간 경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채용 합격자에 대한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063-850-91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3. 응시 모집단위

- 사무보조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무보조원: 전주국토관리사무소

4.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곳)

5. 복수국적 해당여부: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해당없음 중 1개 선택

7.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전화(휴대전화):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 생년월일 작성 예시: 20〇〇년 〇월 〇일

※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응시번호 부여)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연락처	모집단위	응시직종
반드시 기재	반드시 기재	반드시 기재	사무보조원 또는 조리원

▣ 제출목록표(아래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 표시
- *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처리되며,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 각 제출서류의 **작성자 성명과 서명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목 록	필수 여부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필수	✓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필수	✓
3.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A4 2매 이내	필수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필수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6호) 1부	필수	✓
6.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7호) 1부	필수	✓
7.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8호) 1부	필수	✓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되도록 출력) 또는 병적증명서 1부	필수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제출		
9. 저소득층 증빙서류 1부	해당자제출	✓
10.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제출	✓
11. 가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제출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지양)

응시원서

본인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공무원 근로자(국도관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년 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응시번호	기재 불요	응시 모집단위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기입 (ex.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응시직종	사무보조원 / 조리원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해당국적 표기	
전화 (휴대전화)		병역사항	필, 미필, 면제, 해당없음	
주소	(☎)			

..... (☎)

응시표

※응시번호	기재 불요	성명	
응시직종 (응시분야)	사무보조원 / 조리원	생년월일	
2024년 월 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주의사항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직접 배부
- 면접시험 당일은 자격(면허)증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함(면접시험 관련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 번호	기재 불요	응시 직 종	사무보조원 / 조리원	성 명	
지 원 동 기					
성 장 과 정					
주 요 경 력 및 특 기 사 항					
직 무 수 행 계 획					
2024. . .			응시자:		(서명)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7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근로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 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4)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청년인턴 채용 제한 사유가 됩니다.

고유식별 정보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서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응시번호	응시 모집단위	응시직종	생년월일	성 명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성명 : _____ (서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